

대한럭비협회 꿈나무대표팀 전담지도자 공개 채용

대한럭비협회는 대한민국 럭비 종목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대한럭비협회(KOREA RUGBY UNION)는

-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기관으로 럭비 종목 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 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럭비 종목을 소관 하는 월드럭비(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럭비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1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업무
기간제 계약직	꿈나무대표팀 전담지도자	1명	○ 청소년대표 선수 선발·훈련 진행 및 관리 ○ 훈련계획서,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 성과 평가 ○ 훈련 대상 선수 선발 참여 및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 건의 ○ 청소년대표 훈련 참가자의 국외전지훈련 시 인솔 및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과 분석 결과 보고 ○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 연수회 참석 ○ 매월 업무추진실적 및 유망선수 리포트 작성 ○ 청소년대표팀 합숙훈련, 국외전지훈련 후 업무활동보고서 작성 ○ 기타 종목별 우수선수의 양성 및 경기력 향상에 관계되는 사항

2 근무형태 및 조건

채용분야	근무신분	근무지	근로계약기간	월급
꿈나무대표팀 전담지도자	기간제 계약직	꿈나무대표팀 강화훈련지(국내/국외) 및 국제대회 개최지	계약일 ~ '26.2.28.까지	500,000원

* 대한체육회 꿈나무대표팀 전담지도자 수당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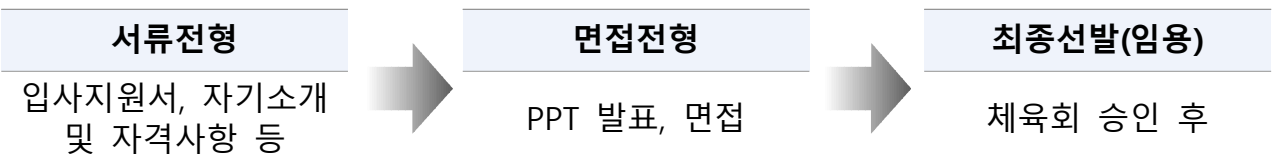
- 계약일 기준 일할계산 지급(월 수당 원천징수 공제 후 수당 지급)

** 4대보험 미지급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필수 자격요건	○ 대한럭비협회 인사규정 제17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인사 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제외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 ○ 채용 즉시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 * 경기 가맹단체 업무 특성상 국내외 대회 출장 및 휴일, 야간 근무자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종목 지도 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2) 해당 종목 지도 경력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 유급 직장 겸직 가능
	우대사항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서류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학과 졸업자 * 체육, 스포츠, 체육종목 전공이 들어가야 인정

4 전형절차



가. 채용일정 * 일정은 사무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추진일정
서류전형 (원서접수)	2025.5.8.(목) ~ 2025.5.31.(토), 15:00 [합격자발표: 2025.6.4.(수)] * 서류제출 시 자격/경력 증빙서류 일체 필수 제출 ** 메일 및 지원서 제목 [꿈나무대표팀 전담지도자 지원(성명) 필수]
면접전형	2025.6.9.(월) 예정 [합격자발표: 2025.6월 중] * 연간 훈련계획서 수립 및 작성 능력(PPT 발표(10장 이내) 평가)
정식임용	채용일 ~ 2026.2.28.

나. 전형별 주요내용(채용방법: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경쟁 채용)

구분	주요내용	합격배수
① 공통(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하며,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 및 경력사항은 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확인하며, 두 서류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두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인정함. - 서류 누락 또는 미 제출 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② 전형별 평가방법		
서류전형	(선발인원) 지원자 전원 * 자격요건에 맞는 지원자 전원 합격처리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평가점수 70점 이하일 경우 탈락 (평가기준) 자격요건,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 등 평가	-

구분	주요내용		합격배수
	구 분	주요내용	
	자격요건 확인	- 필수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 - 문항별 공백 포함 1,000자의 50%미만 작성 시, 탈락 - 동일 음절, 문장 등 5회 이상 반복된 경우, 탈락 - 평가위원 과반 수 이상의 블라인드 작성 원칙 위반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탈락	
	가점요소 평가	-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시 제출)	
면접전형	(일시/장소) 2025.6.4.(수) / 대한럭비협회(올림픽회관) 예정 *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평가기준) 직업윤리관, 체육상식, 적극성, 성실성, 경력 및 경험 (평가방법) 면접위원별 5개 항목 평가 (항목당 20점 만점 총점 100점 만점) (선발기준) 합격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평가항목 고득점자순(성실성 → 적극성 → 직업윤리관 → 체육상식 → 경력 및 경험)으로 결정함. (최종확정) 지원 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확정		1배수
최종합격	(선발기준) 합격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평가항목 고득점자순(성실성 → 적극성 → 직업윤리관 → 체육상식 → 경력 및 경험)으로 결정함. (최종확정) 지원 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확정		-
예비합격 운영	- 차순위 1~2위를 예비 합격자로 하고, 최종합격자 중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순위대로 임용 -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2배수

다. 전형단계별 가점대상(최대 10점 반영)

유형	가점대상	전형단계		우대사항	적용기준	관련근거
		서류	면접			
정부 권장 정책	청년 (만15~34세)	✓		3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해당하는 청년(서류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경력	체육 관련 전공자	✓		2점	체육, 스포츠, 체육종목 전공이 들어가야 인정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용도
① 공통(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수신시간 이후 추가 접수 절대불가(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제출에 문제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 요망)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증빙서류 모두 제출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제출서류 및 방법			
원서접수 [5.8.(목) ~ 5.31.(토)]	- 입사지원서(대한럭비협회 양식) ※ 메일 및 입사지원서 제목 - 꿈나무대표팀 전담지도자 지원(성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 증빙서류 일체	담당자 이메일로 5.31.(토) 15:00 까지 제출 - nationalteams@rugby.or.kr	입사지원 및 확인용
면접당일 [6.4.(수)]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만 인정	- 원본제시 - 사본제출	입사지원 확인용
합격자 발표 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 채용신체검사서 * 단,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원본제출	

< 경력 관련 유의사항 >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 직인(또는 인감)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
- 수기로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는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외 서류(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는 불인정
- 지원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재직 중인 경우, 근무기간은 공고마감일(2025.4.13.)을 기준으로 기재

6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럭비협회 직원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의 계산, 자격증,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럭비협회 홈페이지(<http://rugby.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각 구분(미래국가대표 / 청소년 / 꿈나무 / 국가대표 전담팀)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지원자는 반드시 한 개 채용 분야에만 응시해야 합니다.

7 임용 결격사유

□ 대한력비협회 인사위원회 규정 제17조(임용 결격사유)

제17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협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5. 5. 8.(목)

[사] 대한력비협회